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광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51 발의연월일: 2020. 6. 16.

발 의 자: 박광온·송갑석·임호선

권칠승 · 이장섭 · 전용기

김영배 · 이탄희 · 김영주

김진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아니 되고, 국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등 의원의 입법활동 등을 방송하는 제도를 마련·운용하여야 함.

그런데 국회는 관행적으로 시각 장애인의 보조견 출입을 금지하고 있어 논란이 있으며, 국회방송 및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에서 자막 및 수어통역 등이 충분히 방영되지 않고 있어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제 한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의원의 장애인 보조견 동반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사용은 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, 국회 방송 운용 또는 인터넷 중계방송 시 한국수어·폐쇄자막·화면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48조 및 제149조).

법률 제 호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8조 중 "본회의"를 "「장애인 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사용을 제외하고는 본회의"로 한다.

제14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국회는 제1항의 방송 제도를 운용하거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에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한국수어·폐쇄자막·화면해설 등을 방영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8조(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) 의원은 <u>본회의</u>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.	제148조(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) <u>「장애</u> 인 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보조건의 동반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사용을 제외하고는 본회의
제149조(국회에 의한 방송) ①・ 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	
<u>③</u> · <u>④</u> (생 략)	수어·폐쇄자막·화면해설 등을 방영하여야 한다. ④・⑤ (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)